

#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9월 26일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용어의 명확화 등으로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, 정기적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 방식을 규정하는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제정안의 취지를 살려 '일자리 지원'의 대상을 중장년으로 함(안 제2조).
- 일자리 지원계획의 수립 목적을 명확히 함(안 제3조).
- 실태조사의 주기를 정함(안 제6조).
- 행정권한 이관방식을 명확히 함(안 제8조).

#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항 중 “미취업자”를 “중장년”으로 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일자리 창출을”을 “일자리를”로 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“실태조사를”을 “실태조사를 매년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의 조 제목 중 “업무의 위탁”을 “민간위탁”으로 하고, 제1항 중 “시 출자”를 “서울특별시 출자”로 하며, “위탁”을 “민간위탁”으로 하고, 제2항 중 “민간 위탁에”를 “민간위탁에”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## < 수정조문대비표 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“일자리 지원”이란 <u>미취업자</u>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, 창업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중장년의 <u>일자리 창출</u>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현황 등에 대한 <u>실태조사</u>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8조(<u>업무의 위탁</u>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<u>시 출자·출연</u> 기관에 <u>위탁</u>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<u>민간 위탁</u>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p>	<p>제2조(정의)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“일자리 지원”이란 <u>중장년</u>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, 창업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중장년의 <u>일자리</u>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현황 등에 대한 <u>실태조사</u>를 <u>매년</u>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8조(<u>민간위탁</u>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<u>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</u> 기관에 <u>민간위탁</u>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<u>민간위탁</u>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p>

##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과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회를 확대하여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중장년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- ② “일자리 지원”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, 창업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
2.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,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
3.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
4.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

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전년도 추진실적을 포함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
2.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
3.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
4. 창업 상담과 교육
5.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
6. 취업 및 창업 지원,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기관·단체와의 협력)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 등(이하 “관련기관 등”)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

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 
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 
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홍보) 시장은 언론사,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  
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민간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 
하는 관련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  
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